

전주지방법원 2024. 7. 24 선고 2023재나100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(재심피고), 항소인 1. A

2. B

피고(재심원고), 피항소인 1. C

2. D조합법인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

변론 종결 2024. 6. 26.

판결 선고 2024. 7. 24.

제1심_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. 5. 31. 선고 2015가단10354 판결

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. 7. 6. 선고 2016나4795 판결

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2. 재심소송비용은 피고(재심원고)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,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

1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E(전북 부안군 S, T동 U호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(재심원고, 이하 '피고') C는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3. 2. 21. 접수 제3865호로 마친

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. 1. 23. 접수 제1663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,

나. 피고 D조합법인은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5. 2. 3. 접수 제2297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,
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[원고(재심피고, 이하 '원고')들은 제1심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
원상회복을 구하다가, 재심 전 이 법원에서 E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 및 각 소유권 이전등기(이하 이를
합쳐 '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')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
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]

2. 재심청구취지

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재심대상판결의 확정

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.

가. 원고들과 N(이하 '원고 등')은 E 등이 2012. 4.경부터 원고 등과 공유하는 전북 부안군 F, G
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)를 권원 없이 점유·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공유자인
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E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
2013가합374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, 2014. 4. 30.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
승소판결을 받았다.

나. 이에 E 등이 광주고등법원 (전주)2014나1763로 항소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2. 4. 그 중 E과
원고들에 대하여 'E은 원고들에게 각 3,046,1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
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당사자들이 대법원 2016다12823로 상고하였다(이를 합쳐 '이 사건 관련

1 소송').

다. 원고들은 제1심에서 E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1 소송에서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E이 무자력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, 제1심법원은 이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.

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16나4795로 항소 후 재심 전 이 법원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주위적으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, 예비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이하 '부동산실명법')에 의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E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.

라. 재심 전 이 법원은 2018. 7. 6. 원고들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법원 2018다258111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. 11. 29.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.

2.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

가. 피고들의 주장

이 사건 관련 1 소송에서 원고들과 함께 E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N 등이 피고들을 상대로 당사자만 다를 뿐 그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소송을 전주지방법원 2016나4788(이하 '이 사건 관련 2 소송')로 진행하였고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선고가 이루어졌다가 이 사건 관련 1 소송과 이 사건 관련 2 소송의 상고심에서 E은 원고 등에게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이 있는데 이를 넘어 그 채무를 과다하게 산정하였고, E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각 근저당권의 채무 합계 185,999,595원이 모두 계약인수 되어 E의 소극재산이 될 수 없어 무자력 상태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무자력 상태로 본 것은 채권자 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각 파기환송되었는바,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나. 판단

1)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,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(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).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'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'는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,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, 그 내용에 따라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1다27495 판결,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다33897 판결 참조).

2) 을 제32 내지 39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1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6다12823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로 2023. 9. 14. E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, 이 사건 관련 2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8다260565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로 2023. 9. 27. 이 사건 관련 2 소송을 파기하고 이를 이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, 이 사건 관련 1 소송의 환송심인 광주고등법원 (전주)2023나14 사건에서 원고들과 E 사이에 'E은 원고들에게 각 1,774,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2024. 1. 9.자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, 이 사건 관련 2 소송의 환송후 사건인 전주지방법원 2023나18563 사건이 2024. 5.경 소취하로 종결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, 이 사건 관련 1 소송의 환송전 광주고등법원(전주)2014나1763 판결에 따른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자 E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극재산의 일부로서 그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일부로 사용된 점은 이 법원에 명백하다.

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관련 1 소송의 변경이나 이 사건 관련 2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

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.

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2 소송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 그 자료로 사용된 바가 일체 없고, 어디까지나 E의 별도 채권자들의 소송으로 다만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E의 적극, 소극 재산이 동일한 만큼 채권자 대위권의 존부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겹치는 측면을 가지는데 불과한 점, 각 근저당권의 채무 합계 185,999,595원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이 사건 관련 2 소송의 상고심은 별도 증거 등에 의하여 위 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 결과를 달리하게 된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, 이 사건 관련 1 소송의 환송전 판결에서 인정된 E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와 환송 후 확정된 E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액수가 달라 원고들 별로 각 1,272,104원만큼 감액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E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볼 사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사실인정의 차이가 재심대상판결의 판결 주문이 달라질 정도의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며 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설민수

판사고연금

판사송인우

별지